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 공고문

한국토지주택공사는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**전세사기 피해자등의 피해회복을 지원**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**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신청**을 안내합니다.

해당 공고는 전국 단위 본사 통합공고입니다. **신청인의 피해유형, 피해주택 경·공매 종료 여부 등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**하므로, 해당 공고문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◈ '최소지원금' 및 '선지급-후정산 제도'란?

- 피해자의 **피해 회복금**이 **최소보장금(임차보증금의 1/3)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** 그 부족분(최소지원금) 또는 최소보장금(선지급-후정산)을 국가가 보장·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구분	최소지원금	선지급금
① 신청대상	**전세사기피해자** 또는 **전세사기피해자등(다목)** (신탁사기·무권계약 피해자 포함)	전세사기피해자등(다목) 중 **신탁사기·무권계약 피해자**
	※ 아래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 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임차인 ②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③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소홀히 하여 「민사집행법」, 「국세징수법」 등에 따른 배당·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 (다만, 특별법 부칙 제5조에 따라 '26.11.13.이전에 최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거나 공매공고가 있던 경우는 배당·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) ④ 전세사기피해자등(나목)에 따른 고액 임차인	
② 신청시기	피해주택 경·공매 종료(처분 완료) **후**	피해주택 경·공매 종료(처분 완료) **전**
③ 지원금액	**최소보장금(보증금의 1/3) - 피해 회복금***	**최소보장금(보증금의 1/3)** - (변제받은 금액 + 임대료 재정지원액)(해당시)
④ 지급 후 절차	지원 종료 * 지급 후 회수·변제 등에 따른 신고 시 반납 필요	선지급한 뒤 정산대상액과 비교하여 후정산

* 피해회복금 = 경·공매 배당금·배분금 + 변제받은 보증금 + 경매차익 +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

※ 사전 신청 개시일 : 2026. 11. 10(화) 14:00 / 접수 및 심사 개시일: 2026. 11. 13(금)

관련 유의사항

❶ '26.11.10(화) 14:00 부터 사전 신청 가능하며, 접수·심사는 법 시행일('26.11.13) 이후 개시됩니다.

❷ 온라인 《셀프 검증 서비스》 안내

신청 전 온라인 셀프 검증을 통해 피해자 본인의 지원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서비스 이용 후 유선 상담 및 지급 신청을 권장드립니다.

* 「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>최소보장(전세피해)>(신청 전)셀프 검증하기」(로그인 후 이용 가능)

❸ 신청 전, 공고문의 지원 내용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, 본인의 지원이력 등 관련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붙임1 참조)

❹ (벌칙 및 과태료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동법 제3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,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에 대한 **미신고시** 동법 제34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❺ 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, 특별법 제25조·제25조의2·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최소지원금·선지급금 지급 이후 희망 시 최장 긴급주거지원(2년) 또는 임시거주(6개월) 가능합니다.

한눈에 보는 피해자 유형별 신청방법 · 신청시기

피해자 유형	피해주택 경·공매 상황		신청방법 및 신청시기
	LH 매입	제3자낙찰 등 (경·공매종료)	
전세사기피해자	O	-	경매차익 산정완료 시 별도 안내
	X	O	LH 청약+
피해자등 다목	-	O	LH 청약+
피해자등 다목 **(무권계약피해자)**	-	O / X	LH 청약+
피해자등 다목 **(신탁사기피해자)**	O	-	경매차익 산정완료 시 별도 안내
	X	O	LH 청약+
		X	LH 매입요청 시 별도 안내[2]

* LH 청약+ **(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) 신청**

- 「최소보장(전세피해)>최소지원금/선지급금 신청하기」 접속 후 신청(로그인 후 신청 가능)

1) **LH 임대주택 거주 중(주거지원)인 경우**는 해약(퇴거) 시 산정 후 별도 신청 안내드립니다.

2) **신탁사기 피해자**가 선지급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, 피해주택의 LH 매입 요청 시 별도 안내드립니다.

1 최소지원금 제도(최소지원금 신청)

1 최소지원금 지급절차

단계	주요 내용
① 신청	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(피해자 → LH)
② 접수·심사	신청요건 및 피해회복금액 등 검토 및 심사 (LH)
③ 결정·통지	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·통지 (LH → 피해자) *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적 통지(카카오톡 전자문서) 선택 가능
④ 지급	최소지원금 지급 *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경우 해약·퇴거와 지원내역 정산 후 지급

※ 지급 여부는 신청받은 날부터(사전 신청한 경우 시행일부터) 90일 이내 결정합니다.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2 최소지원금 신청대상

□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신청 요건
피해자 결정	특별법에 따른 **전세사기피해자** 또는 법 **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**으로 결정된 자 (신탁사기·무권계약 피해자 포함) ※ 피해자유형 확인방법 붙임2 참고
피해회복 수준	배당·배분금, 변제받은 금액, 경매차익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 **피해회복금의 합계가 임차보증금의 1/3에 미달하는 자**

※ 시행('26.11.13)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되었거나 경·공매가 종료된 경우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단, 아래 해당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임차인
②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
③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행사를 소홀히 하여 「민사집행법」, 「국세징수법」 등에 따른 배당·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
(다만, 특별법 부칙 제5조에 따라 '26.11.13.이전에 최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거나 공매공고가 있던 경우는 배당·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)
④ 전세사기피해자등(나목)에 따른 고액 임차인
⑤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 받은 자

3 최소지원금 산정기준

◈ **최소지원금= 최소보장금(A) − 피해회복금(B+C+D)**

항 목	내 용
A. 최소보장금	임차보증금의 3분의 1(원단위 미만 절사)
B. 배당·배분금	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 (경매 또는 공매 등을 통해 받은 **배당액 또는 배분액**)
C. 변제받은 금액	**임대인 등**(대항력이 있는 최소보장피해자의 임차주택을 매수한 자도 포함) **으로부터 회수·변제받은 금액** *「공인중개사법」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 포함
D. 법에 따른 지원액	특별법에 따른 경매차익 및 최소지원금 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합계

* 미납 임대료 공제 등으로 인해 배당표 상 임차보증금과 채권원금이 상이한 경우, **공제 금액은 회복금액에 포함**됩니다.(신청 시 해당 금액은 C. 변제받은 금액에 기재)
* 임대인, 중개사 등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**회복금액에 포함**됩니다.(신청 시 해당 금액은 C. 변제받은 금액에 기재)

□ **계산 예시** (임차보증금 9,000만원인 경우)

항목	예시 ①	예시 ②
최소보장금(A)	3,000만원	3,000만원
배당금(B)	1,000만원	1,000만원
변제받은 금액(C)	0원	0원
경매차익(D)	1,500만원	1,500만원
임대료 재정지원액(D)	0원	300만원
최소지원금(A-(B+C+D))	500만원	200만원

※ 위 예시는 제도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, 실제 지급액은 증빙서류와 지원내역 등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.

4 최소지원금 신청시기

피해주택 경·공매 상황	신청 가능한 시기
LH가 매입한 경우	**경매차익 산정 완료 이후** (협의매수로 매입한 경우 LH 매입완료 이후)
LH가 매입하지 않은 경우(제3자낙찰 등)	경·공매 종료에 따른 **배당·배분 완료 이후** (신탁사기 피해주택은 LH가 아닌 자에게 피해주택이 매각된 이후)

※ 신청가능기간은 피해자등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입니다. 다만, 시행 전 피해자로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는 시행일('26.11.13.)부터 신청기간을 기산합니다.
※ **LH 임대주택 거주 중(주거지원)인 경우**는 해약(퇴거) 시 산정 후 별도 신청 안내드립니다.

5 최소지원금 신청방법

□ 본인의 피해주택 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피해주택 경·공매 상황	신청방법
LH가 매입한 경우	경매차익 산정완료 후 최소지원금 해당 시 별도 안내 (LH → 피해자)
LH가 매입하지 않은 경우 (제3자낙찰 등)	LH 청약+ (온라인 신청)

* LH 청약+(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) 온라인 신청
  - 「최소보장(전세피해)>최소지원금/선지급금 신청하기」 접속 후 신청(로그인 후 신청 가능)

※ LH 임대주택 거주 중(주거지원)인 경우는 해약(퇴거) 시 산정 후 별도 신청 안내드립니다.

6 최소지원금 신청서류(#양식 별첨 참고)

구분		제출서류	대상
❶	동의서 등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**(양식 별첨1)**	**공통(필수)**
❷	신청서	최소지원금·선지급금 지급신청서 **(양식 별첨2)** * 반드시 본인 명의 지급계좌 기재	**공통(필수)**
❸	피해사실 확인	피해자 결정문, 임대차계약서 사본	**공통(필수)**
❹	신분 확인	주민등록표 초본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	**공통(필수)**
❺	주택 확인	피해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	**공통(필수)**
❻	배당표 등	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	해당 시
❼	변제 내역	**임대인등으로부터**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**반환·변제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**	해당 시
❽	통장 사본	**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의 통장사본** *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지급 가능	**공통(필수)**
대리인 신청 시		위임장**(양식 별첨3)** 및 위임 관련 신분확인 서류	해당 시
전자적통지 (카카오톡 전자고지) 희망 시		**양식 별첨4** 작성(미작성 시 서면 통지) * 결정 통지서를 전자적 통지로 수령받길 희망하는 경우 작성	해당 시

※ 심사 시 추가 확인자료 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2 선지급-후정산 제도(선지급금 신청) [신탁사기·무권계약 피해자만 신청 가능]

□ 선지급은 전세사기피해자등(다목) 중 **신탁사기피해자 또는 무권계약 피해자만 신청 가능**하며, **신탁사기피해자**는 **LH에 피해주택 매입 요청 동시 신청 시**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1 선지급금 지급절차

단계	주요 내용
① 신청	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(피해자 → LH) (신탁사기피해자는 LH 피해주택 매입 요청과 동시 신청)
② 접수·심사	신청요건 및 피해회복금액 등 검토 및 심사 (LH)
③ 결정·통지	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·통지 (LH → 피해자) *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적 통지(카카오톡 전자문서) 선택 가능
④ 선지급	선지급금 지급 *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경우 해약·퇴거와 지원내역 정산 후 지급
⑤ 후정산	정산대상액 산정 이후 선지급금과 비교하여 추가 지급 여부 결정

※ 지급 여부는 신청받은 날부터(사전 신청한 경우 시행일부터) 90일 이내 결정합니다. 서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2 선지급금 신청대상

□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신청 요건
피해자 결정	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 중 **신탁사기 피해자 또는 무권계약 피해자**로 결정된 자 ※ 피해자유형 확인방법 붙임2 참고
피해회복 수준	변제받은 보증금, 선지급금 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(임대주택 거주 시) **피해회복금의 합계가 임차보증금의 1/3에 미달하는 자**

※ 시행('26.11.13)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단, 아래 해당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①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임차인
② 본인의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
③ 전세사기피해자등(나목)에 따른 고액 임차인

3 선지급금 산정기준

◈ **선지급금 = 최소보장금(A) − 피해회복금(B+C)**

항 목	내 용
A. 최소보장금	임차보증금의 3분의 1(원단위 미만 절사)
B. 변제받은 금액	임대인 등(대항력이 있는 최소보장피해자의 임차주택을 매수한 자도 포함)으로부터 회수·변제받은 금액 * 「공인중개사법」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한 금액 포함
C. 법에 따른 지원액	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(LH 임대주택 거주(주거지원) 시)

* 임대인, 중개사 등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**회복금액에 포함**됩니다.(신청 시 해당 금액은 B. 변제받은 금액에 기재)

□ **계산 예시**(임차보증금 9,000만원인 경우)

항목	예시 ①	예시 ② (LH 임대주택(주거지원) 퇴거 시)
최소보장금(A)	3,000만원	3,000만원
변제받은 금액(B)	0원	0원
임대료 재정지원액(C)	0원	300만원
선지급금(A-(B+C))	3,000만원	2,700만원

※ 위 예시는 제도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, 실제 지급액은 증빙서류와 지원내역 등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.

4 선지급금 신청시기

구분	신청 가능한 시기
LH 매입을 요청한 신탁사기 피해자	신탁사기피해주택의 LH 매입 완료 전까지 (LH 매입 완료 이후는 최소지원금으로 신청)
그 밖의 선지급 대상 피해자	피해주택 경·공매 종료(처분 완료) 전까지

※ 피해주택의 경·공매 종료(처분 완료)된 경우, 최소지원금 신청에 해당됩니다.(3~5p 최소지원금 참고)
※ 신청가능기간은 피해자등 결정일부터 3년 이내 입니다. 다만, 시행 전 결정된 최소보장피해자는 시행일('26.11.13.)부터 신청기간을 기산합니다.
※ **LH 임대주택 거주 중(주거지원)인 경우**는 해약(퇴거) 시 산정 후 별도 신청 안내드립니다.

5 선지급금 신청방법

□ 본인의 피해주택 경매상황에 맞는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피해자 유형	신청방법
신탁사기피해자	현장(우편) 접수 (LH 매입요청 시 선지급을 희망하는 경우, 동시 신청)
무권계약 피해자	LH 청약+ (온라인 신청)

* LH 청약+(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) 온라인 신청
- 「최소보장(전세피해)>최소지원금/선지급금 신청하기」 접속 후 신청(로그인 후 신청 가능)

※ **신탁사기피해자**는 피해주택을 LH에 매입 요청하였으나, LH로부터 매입불가 등의 사유를 통보받은 경우, 통보 이후 해당 사유 해소 시 매입요청의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붙임1 참고)

※ **LH 임대주택 거주 중(주거지원)인 경우**는 해약(퇴거) 시 산정 후 별도 신청 안내드립니다.

6 선지급금 신청서류(#양식 별첨 참고)

구분		제출서류	대상
❶	동의서 등	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**(양식 별첨1)**	**공통(필수)**
❷	신청서	최소지원금·선지급금 지급신청서 **(양식 별첨2)** * 반드시 본인 명의 지급계좌 기재	**공통(필수)**
❸	피해사실 확인	피해자 결정문, 임대차계약서 사본	**공통(필수)**
❹	신분 확인	주민등록표 초본,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	**공통(필수)**
❺	주택 확인	피해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	**공통(필수)**
❻	신탁 관계	신탁원부	신탁사기피해자
❻	배당표 등	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	해당 시
❼	변제 내역	**임대인등으로부터**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**반환·변제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**	해당 시
❽	통장 사본	**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의 통장사본** *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만 지급 가능	**공통(필수)**
대리인 신청 시		위임장**(양식 별첨3)** 및 위임 관련 신분확인 서류	해당 시
전자적통지 (카카오톡 전자고지) 희망 시		**양식 별첨4** 작성(미작성 시 서면 통지) * 결정 통지서를 전자적 통지로 수령받길 희망하는 경우 작성	해당 시

※ 심사 시 추가 확인자료 또는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⑥ 후정산 처리 방법

□ 선지급 후 정산대상액이 발생한 경우, 이를 고려하여 선지급금과 비교·정산합니다.

*** 정산대상액이란?**
-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받은 금액,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, 제25조,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 등

정산 결과	처리 방법
정산대상액 > 선지급금	초과분을 최소보장피해자에게 추가 지급
정산대상액 ≤ 선지급금	최소보장피해자에게 추가 지급 없이 정산

3 유의사항

① 본인의 전세사기·신탁사기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사람은 최소지원금 신청이 제한됩니다. 선지급 후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지급받은 선지급금을 반납해야 합니다.

②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사람은 최소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선지급금 지급 이후의 차액은 후정산으로 처리합니다.

③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하여 배당·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이 제한은 2026. 11. 13. 이후 최초로 경매개시결정이 있거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
④ **최소지원금 또는 선지급금을 지급받으면 특별법 제25조·제25조의2·제25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최소지원금·선지급금 지급 이후 희망 시 긴급주거지원(2년) 또는 임시거주(6개월) 가능합니다 .**

⑤ **LH 임대주택 거주 중으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**, 해약(퇴거) 신청 시 담당자가 최소지원금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 후 신청절차를 별도로 안내 드립니다.(퇴거일에 정산 후 지급)

⑥ 임대인등으로부터 회수·변제받은 금액, 배당·배분금, 임차보증금반환소송 및 공제증서 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경우 등 **실제 회복한 금액과 법에 따른 지원내역을 빠짐없이 제출**해야 합니다.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3조(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) 및 제34조(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)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, **지급 후 추가 회수·변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신고**해야 합니다.

7 **최소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보증금을 회수·변제받은 경우, 회수·변제받은 금액을 반납하되, 지급받은 최소지원금을 한도로 합니다.** 또한, 선지급 후 정산대상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었던 사람이 추가 회수·변제를 받으면 선지급금에서 정산대상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반납합니다.

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, 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반납하여야 할 최소보장 피해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.

9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최종 지급금은 LH 임대주택 거주(주거지원) 후 퇴거 시 미납사용료·관리비 등 정산사항 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10 결정 통지는 서면으로 통지하되, 신청인이 신청(양식 별첨4 작성 및 제출)한 경우 전자적 방법(카카오톡 전자문서)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.

11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 등에 이의가 있으면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(양식 별첨5)와 증빙 자료를 LH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절차는 결정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2 최소지원금·선지급금 및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압류할 수 없습니다.

13 신청인 피해주택의 상황, 회복 금액 등의 개인의 복잡한 상황 등으로 인해 설명 과정에서 상담사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, **피해자 개인의 주거지원에 미치는 유불리에 대한 판단은 신청자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**

붙임1 최소보장 지역본부별 담당자 연락처

◈ 담당자 유선 문의 전 LH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「셀프 검증하기」서비스를 먼저 이용하시어 본인의 대상 여부,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 받으시길 권장 드립니다.

* 「LH청약플러스>최소보장(전세피해)>(신청 전)셀프 검증하기」 접속 후 이용(로그인 후 이용 가능)

< LH 지역본부별 관할지역 및 연락처 >

지역본부	관할지역 (피해주택 소재지)	담당자 연락처
서울지역본부	서울특별시	02-2015-1055
인천지역본부	인천광역시, 경기도 부천시	032-890-5316, 5318, 5483
경기남부지역본부	경기도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평택시, 안산시, 과천시, 오산시, 군포시, 의왕시, 용인시, 안성시, 화성시, 광주시, 이천시, 여주시, 광명시, 시흥시	031-250-8342, 8119, 8157, 8118, 8170, 8317, 8137
경기북부지역본부	경기도 의정부시, 포천시, 남양주시, 가평군, 구리시, 양주시, 동두천시, 연천군,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, 하남시, 양평군	02-6040-1309, 1367
부산울산지역본부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	051-460-5980 051-796-6038
대구경북지역본부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	053-603-2763, 2765
광주전남지역본부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	062-360-3254, 3212
대전충남지역본부	대전광역시, 충청남도, 세종특별자치시	042-470-0679, 0690
경남지역본부	경상남도	055-210-8604, 8658, 8576
강원지역본부	강원특별자치도	033-258-4124, 4156
충북지역본부	충청북도	043-901-4524
전북지역본부	전북특별자치도	063-230-6257, 6238, 6444, 6391
제주지역본부	제주특별자치도	064-720-1036

※ LH 임대주택 거주 중(주거지원)인 경우는 해약(퇴거) 신청 시 별도 안내드립니다.

붙임 2 피해자 유형 확인방법

◈ **나의 피해자 유형 확인방법**

① 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 통지서를 통해 "피해자" 인지, "피해자등 다목" 인지 확인

② "피해자등 다목"의 경우, 결정문의 "결정이유" 내용을 확인하여 다목(일반), 다목(무권), 다목(신탁) 피해자를 구분

피해자 유형	결정문 내 확인 사항
전세사기피해자 **⇒ 최소지원금 대상**	■ **결정주문 : "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"** (피해자는 결정 통지서의 결정구분으로도 확인 가능)
전세사기피해자등 다목 (일반) **⇒ 최소지원금 대상**	■ 결정주문 : "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" ■ **결정이유 : "「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"**를 확인 또는 "이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,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" 문구 포함
전세사기피해자등 다목 (무권계약 피해자) **⇒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대상**	■ 결정주문: "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" ■ **결정이유**: "「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**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**"를 확인
전세사기피해자등 다목 (신탁사기피해자) **⇒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대상**	■ 결정주문: "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" ■ **결정이유:** "「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으로서 **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(신탁)**"를 확인